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431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정유진, 김재환, 한성준, 김지언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경남 하동군 F 답 2,005㎡ 중 2/20 지분에 관하여 2020. 1.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제1항 기재 토지 중 2/2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0. 3. 31. 접수 제4876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경남 하동군 F 답 2,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9 지분에 관하여 2020. 1.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1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0. 3. 31. 접수 제4876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양수금) 채권

1) G 주식회사는 2011. 7. 14. E과 대출한도액 5,000,000원, 대출이자 연 36.5%, 계약만료일 2014. 6. 9.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E에게 1차로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매월 7일 140,000원씩 상환하기로 하였다.

E은 2011. 8.경부터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 오다가 2013. 7. 10.자 일부상환을 한 뒤로는 더 이상 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2) G 주식회사는 2013. 12. 26. H 주식회사에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E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H 주식회사는 다시 2017. 9. 1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0.경 E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3) 한편, H 주식회사는 위 채권양도 전인 2017. 5.경 E을 상대로 위 채권에 기한 원금 1,393,165원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449309 사건, 같은 법원 2017차전215675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소송절차회부됨), 위

법원은 2017. 8. 22.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7. 9. 16.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I이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망 I은 1983. 12.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 처 J(상속분 3/20)과 장남 피고(상속분 3/20), 차남 E(상속분 2/20), 나머지 자녀들 K, L, M, N, O, P(각 상속분 2/20)이 있었고, 위 상속인들에게 1992. 2. 7. 위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1)

2)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0. 3. 31. 접수 제4876호로 피고에게 ‘2020. 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라 하고, 등기원인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다. E의 재산상태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한편, E은 2013년경부터 신용카드 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다. 원고에 대하여는 원금 1,393,165원과 대략 2013. 7.경부터 발생한 연 36.5%의 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2) 그밖에 R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3. 10. 7. 기준 2,551,000원의 채무가 연체등록이 되어 있었고(이후 위 대부업체의 신청으로 2021. 9.경 처분금지가처분이 되기도 하였다), S카드에 대하여는 2013. 8. 30. 기준 6,994,000원의 채무가 연체등록이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7, 10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T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인 2/19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E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으로 원금 1,393,165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함이 없이 카드대금과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게 되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거나 E이 다른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E의 상속분인 2/2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고는 E의 상속분이 등기부상 표시인 2/20를 초과하여 2/19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 I의 사망으로 E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2/20 지분에 관하여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피고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하여 상속분이 모 J과 같은 3/20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상속분을 고려하면 E의 상속분은 2/20로 계산되고, 달리 E이 이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E의 상속분인 2/20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2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진 2020. 3. 31.경 또는 적어도 E의 2020. 4.분 연체가 발생한 무렵에는 위 소유권경정등기에 관하여 알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하는데,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20. 3. 31.경 또는 2020. 4.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에 관하여 알았다거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제척기간

도와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E이 위 대출금에 관하여 2013. 10.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G 주식회사가 위 대여금 채권을 H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2013. 12. 30.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통지 다음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9. 1.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 주식회사가 2017. 5.경 E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에 기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소송절차회부됨) 2017. 8. 22. 청구인용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7. 9. 16.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7. 5.경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① 망 I 사망 후 망인과 모 J의 뜻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혼자 관리해 왔고, 나머지 가족들 역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라고 생각해 왔는데, 다만 2020년경 공동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피고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치기 위해 편의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② 또한 피고는 등기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E에게는 과거 2013년경 3,000만 원을 송금해 준 바도 있어, 결국 E은 그가 받을 상속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받았고, 재산분할의 결과가 E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E의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또는 소유권이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가)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 I으로부터 증여 내지 유증 받았거나, 그밖에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아닌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992년경부터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2020년까지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한편,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의 배우자 U에게 2020. 1. 30. 80만 원, 2021. 2. 14.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2.경 K에게 2,500만 원, L에게 1,000만 원, M에게 500만 원, N측에 500만 원, O측에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21. 3.경 모 J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7~8년 전인 2013. 1. 4. E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바도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E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이 특별수익 등으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재산분할의 결과는 E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시기는 대부분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다 송금한 금액도 일정하지 않고 상속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며 그 산정 기준도 불분명하다.

○ 피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여 주장하는 금액(19,047,5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E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일로부터 무려 7년 전이고 이를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E이 특별수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라) 설령 E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지급받은 80만 원이나 약 11개월 후 지급받은 4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 중 E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는 데 대한 대가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인 E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마)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

1) 하동군 Q 토지가 1981. 2. 18.경 분할되어 나가면서 이 사건 토지는 현재와 같은 면적이

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상 1992. 2.7.에 위 분할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상속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2) 위 비율에 따르면 6년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약 305만 원으로 계산되므로, 2020. 1. 기준 원리금 합계는 약 470만 원이 될것으로 보인다.